

위원회설치 규정

제정 2001. 9. 1. 전문개정 2013. 3. 1.
전문개정 2013. 11. 15. 개정 2016. 1. 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구성)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단,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총장이 위촉한다.

제3조(임기)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조(운영)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 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록)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은 참석위원들이 날인하여 별도 보관한다.

제6조(간사) ① 각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주관부서 직원으로 한다.(단, 위원회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)

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, 간사, 참고인 등에 대한 수당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6.1.6.>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

② 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